

## ■ 승소사례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 ■ 사실관계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1986년경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대구 00경찰서 00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2012. 5. 11.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보훈청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방보훈청은 2013. 7. 2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원래 중증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망인의 위와 같은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수행상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위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에 불복하여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저희는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은 망인의 배우자를 대리하였습니다.

#### ■ 소송의 쟁점 및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 것인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도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를 대리한 저희 법무법인은 “① 망인이 평소에 심장질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사망 당시 근무한 지구대 업무 자체가 주야교대 근무형태로서 인간의 생리리듬에 역행하는 것인 점, ② 특히 사망 전 3개월 전부터 휴무일에도 근무를 하고 24일간 야간근무를 하는 등 피로가 누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직무수행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의 심장질환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대구지방보훈청이 위 비해당결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 망인은 심장질환이 있었으나 2004. 1. 2.경 받은 수술로 위 질환이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당시부터 존재하던 심장기능의 이상 증세가 악화되어 중증의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점, 2) 망인이 사망하기 15개월 전부터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근무여건상 자주 야간근무, 휴일근무, 초과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는 건강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휴일근무와 야간근무를 빈번하게 하면서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3) 일반적으로 지구대 근무 경찰관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다른 기능의 경찰관 근무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 4) 망인에 대한 부검의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5) 망인이 위와 같이 심장질환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근무강도가 약한 부서로 배속되는 배려나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지구대에서 감당하지 어려울 정도로 강도 높은 근무를 계속하던 중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된 탓에 기존 질환인 심부전증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폐정지를 일으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였습니다.